개정일 2012. 6. .

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/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제11조 (서비스의 제한) ①~⑤ <생 략> **<신 설>**	제11조 (서비스의 제한) ①~⑤ <생 략> **⑥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·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. 다만,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**	금감원 '지연인출 제도' 도입에 따른 제한 조항 신설
⑥ 기타 법령사항의 사유로 인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될 때	⑦ 기타 법령사항의 사유로 인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될 때	번호 체하